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1

발의연월일: 2020. 7. 27.

발 의 자: 백혜련·기동민·김민철

김민석 • 김남국 • 신정훈

홍성국 · 김회재 · 박성준

남인순 · 최기상 · 박영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9.4.11., 2017헌가30).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제2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	
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	
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科)한다. <u><단서 신설></u>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